

해외 입양에서의 인권 침해 및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신청서

1.0 서론

한국계 덴마크 해외입양인 설립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Danish Korean Rights Group)을 대표하여 한국의 권위주의 통치 기간 동안 해외입양 분야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및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KRG는 한국에서 덴마크로 보내진 입양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동 신청서 작성 시점에서 입양인 170여명이 DKRG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DKRG는 덴마크 해외입양인의 권리, 입양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에 대한 권리,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DKRG의 조사 요청은 덴마크 해외 입양인 다수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희는 한국인으로서 근원을 찾고 입양인으로서 자신의 배경을 알고자 합니다. 따라서 입양인에게 배경 정보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접근성은 큰 중요성과 의의가 있으며, 일부 입양인의 경우 자신의 뿌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입양 경위 파악에 대한 접근성, 친생가족 찾기를 위한 접근성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입양 기관의 현재 관행은 권위주의 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입양 기관의 관행은 현재 사후 서비스에 있어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입양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입양인인 저희는 더 이상 권위주의 시대의 한국이 해외 입양을 통해 해외로 보낸 아동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는 입양을 통해 맡겨진 여러 사회와 나라에서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을 추구하는 성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르러 어떻게 입양인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정체성, 성격, 자율성, 자유를 만들어가는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양인 다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에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에 대한 질문은 입양인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의 배경은 자녀의 배경이기도 하며, 이는 한국인이라는 뿌리와 배경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저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우려가 되고 정서적인 여파가 있는 정보와 지식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계 입양인으로서 저희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그 진실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입양인 개인이 입양경위 및 가족 찾기에서 겪는 고충: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의 필요성

진실화해위원회의 이전 조사는 폭력, 학살, 폭력 행위 등 구체적인 형태의 과거의 제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저희는 해외 입양에 있어 여러 단발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이를 허용한 입양 시스템과 정부의 입양 정책의 수립 및 형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입양인은 개개인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권위주의 시대에 형성되고 수립된 입양제도는 그 자체가 기본 인권을 도외시하고 학대를 입양과정 자체에 제도적으로 내재화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권위주의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입양의 중심 주체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입양제도는 지난 2012년 진정한 의미의 입양법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동 법은 해외 입양에서 기존의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 법 자체가 기존의 관행에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음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바는 권위주의 시기 동안의 입양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입니다.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도록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자, 해외 입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대와 불법 행위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자국민인 아동들의 기본 인권 침해와 학대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작위(作為)를 통해 무엇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부작위(不作爲)를 통해 무엇을 방관해왔는지입니다.

2022년 7월 17일자 뉴시스의 기사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배·보상특별법 희망...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검토](#)

“기자: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이 있나.

정근식 위원장: 아직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해외 입양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이 많다. 해외로 입양된 사람 중 본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가을쯤에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는 등 윤곽이 잡힐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에 힘입어, DKRG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2 해외입양과 한국

약 1963년 이후 약 9,000명의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권위주의 통치 기간 동안 국가의 승인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래 섹션 1.3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입양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 신청서에 기술된 인권침해 사건들은 해당 정권에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양기관의 주요 행정 관행 원칙은 권위주의 시대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립되었으며, 권위주의 시대에 뿌리를 둔 이 같은 행정 관행은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관행으로는 문서 위조, 부패, 부실 행정, 서류 관리 미비 등 여러 중대한 부정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섹션 1.4에서 상술).

입양 기관 설립은 정부와 관계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당국의 승인과 인정 없이는 입양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한국 아동의 수는 여러 입양 기관에 분배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분배는 중앙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한국 아동은 해외 입양 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해외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의 직인은 한국 아동의 국적 취소 문서 등에서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직인과 승인은 해외 입양국으로의 입양인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된 여행 문서에서 발견됩니다.

경찰 당국과 지방 자치 단체의 직인과 서명도 해외입양 문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지방 정부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해외 입양에 전반적으로 관여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최대 **200,000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해외에 입양되었고, 이 중 다수의 해외 입양은 권위주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가장 약한 국민을 누가 보호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외 조약의 답은 분명합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입양 기관을 승인하고 누가 입양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입양 사업 운영 방식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 시대뿐 아니라 현재도 입양기관 인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과 감독의 의무는 실제 입양 준비 서류에서 지방정부(경찰, 시·군)와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이 등장하고, 아동이 도착 국가의 국민이 될 때까지는 한국이 아동의 복지와 이익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사실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해외 입양의 모든 단계에 관여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어린 국민인 한국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하고 해외입양의 근거가 정확하고 사실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압, 뇌물, 문서 위조, 부실 행정, 문서 및 기록 미비, 가짜 고아 호적 등을 통한 불법 입양이 없도록 해야 할 공식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 작위(作爲)나 소극적 부작위(不作爲)를 통해 불법 입양에 기여해왔는지 여부, 현재 덴마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입양인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관행에 역할을 해왔는지 여부입니다.

오늘날 해외 입양인들이 권위주의 정권의 입양관행과 정책의 여파를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 입양 관행 및 정책의 결과에 대한 회복의 노력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인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국의 입양 관행과 정책으로 인한 여파를 현재까지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사는 많은 전(前) 한국 국민들에게 회복과 화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세계 최대의 사회적 실험이었던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1.3 권위주의 시대의 관련성과 한국 아동의 덴마크 해외입양

덴마크 입양인의 상황을 권위주의 시대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에서 덴마크로의 입양 건수가 두드러집니다.

1963년부터 2021년까지 총 8,814명의 한국 아동이 해외입양을 통해 덴마크로 보내졌습니다.

즉, 한국 출신 덴마크 입양인의 **88.38%**가 권위주의 시대에 입양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해외 입양 중 권위주의 시대 이후의 비중은 **11.62%**에 불과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입양법을 최초로 시행하고 부분적 법적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이 수치는 **0.61%**에 이릅니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와 권위주의 통치가 해외 입양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입양 분야에서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수립된 입양 시스템이 지속되다가 2012년 한국 최초의 입양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규제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연도	입양인 수	%
1963-1979	3851	43,69
1980-1988	3339	37,88
1988-1993	600	6,81
1963-1993	7790	88,38
1994	—	0
—	20	합계
덴마크 입양인	8814	100,000

1963년부터 1993년까지 덴마크로 보내진 한국 아동의 수는 268.62 명, 매달 22명 이상에 이릅니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덴마크로 보내진 한국 아동의 수는 평균 39.38명입니다.

두 기간 사이에는 6.8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권위주의 정권 기간 동안의 연간 입양 아동 수가 그 이후 기간 대비 평균 7배 높습니다.

한국의 연간 해외 입양 수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기간 동안 덴마크에만 2,723명의 아동이 보내졌으며, 이 수치에 따르면 동 기간 연 평균 입양아는 390여명에 달합니다.

덴마크만 해도 한 달에 32명 이상, 매일 평균 1명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연도	덴마크로의 입양 사례 수
1980	403
1981	402
1982	483
1983	347
1984	295
1985	402
1986	401
합계	2,733

숫자가 말해줍니다. 권위주의 시대와 권위주의 통치는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입양은 권위주의적 통치, 한국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을 해외입양으로 보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연간 덴마크 향(向) 한국 입양인 수:

1953-57		1974	542	1981	402	1988	270	1995	120	2002	45	2009	21	2016	5
1958-68	13	1975	246	1982	483	1989	109	1996	80	2003	56	2010	21	2017	6
1969	12	1976	419	1983	347	1990	136	1997	65	2004	53	2011	16	2018	7
1970	126	1977	460	1984	295	1991	115	1998	63	2005	46	2012	10	2019	3
1971	308	1978	417	1985	402	1992	101	1999	65	2006	43	2013	5	2020	3
1972	347	1979	406	1986	401	1993	139	2000	68	2007	22	2014	7	2021	3
1973	555	1980	403	1987	336	1994	105	2001	61	2008	20	2015	5		
Total															8,814

상기 표는 덴마크 입양건의 수치입니다. 한국 아동이 입양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즉, 한국 해외 입양의 대다수가 권위주의 시대에 이뤄졌습니다.

표 상의 수치는 덴마크만 해당됩니다. 한국의 해외 입양 총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해외 입양 규모는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 관행에 대해 인지했음을 시사합니다.

DKRG에 파악한 입양인 대부분은 고아나 계단이나 경찰서에 유기된 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기아동과 고아는 그 규모만으로도 입양 서류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입양인 대부분은 출생지가 인천, 부산, 서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사실이라면 권위주의 시대에 한국의 거리와 계단은 말 그대로 연일 고아들로 넘쳐났고, 경찰에 수만 건의 유기 신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입양 서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한국 입양인들이 친족을 찾고 입양 서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연을 들을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즉, 그들은 고아가 아니었고, 고아였던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관계 당국은 아동을 서류상 적법한 고아 혹은 유기 상태로 만든 입양 서류의 승인과 날인을 통해 아동의 신분 세탁과 불법 입양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1.4. 한국으로부터의 해외입양에 대한 네덜란드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는 해외입양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2021년 2월에 발표되었다. 한국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1998년 이전 기간, 즉 1993년 이전과 군사 독재 정권 시기를 포함한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유형의 학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1) 누락된 개인 정보/누락된 문서
 - 2) 문서 위조
 - 3) 잘못된 행정처리처리
 - 4) 사기 및 부패
- (부록 1: 네덜란드 보고서, 124쪽 참조)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모두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진 비교 가능한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의 입양과 관련하여 누락된 개인정보 / 누락 된 문서, 문서 위조, 잘못된 행정처리처리와 사기 및 부패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한국으로부터의 해외 입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네덜란드로의 입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대를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입양 사례 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로 문서 위조 및 수의 창출과 관련된 아동 절도가 있습니다. 즉, 학대는 대개의 경우 동시에 서로 연관되어 발생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학대가 나타납니다.

- 문서 및/또는 개인 정보의 부재;
- 문서 위조;
- 올바른 행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사기 및 부패: 고의적으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오도하고 속이는 행위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위나 권력을 오용하는 것" (해외입양에 관한 네덜란드 보고서, 부록 1, p.122 참조)"

네덜란드 정부의 보고서에서 개인 정보 누락 / 누락 된 문서, 문서 위조, 잘못된 행정처리처리와 사기 및 부패의 발생을 언급하면서도 더 심도 있게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네덜란드 위원회의 권한이 미치는 핵심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가 바로 이 영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Scope/time period	Country	Abuses							
		Missing personal data/documents	Document forgery	Maladministration	Fraud and corruption	Concealment of status	Child theft	Child trafficking	Baby farms
Countries in the order establishing the Committee	Bangladesh								
	Brazil								
	Colombia								
	Indonesia								
	Sri Lanka								
Before and after 1998	Chile								
	Ethiopia								
	Greece								
	India								
	Peru								
	Poland								
	Romania								
	Taiwan								
	Thailand								
	South Korea								

진한 파란색 = 구조적으로 식별됨, 밝은 파란색 = 가끔 식별됨, 회색 = 알 수 없음

네덜란드 위원회의 조사는 사기, 잘못된 행정처리, 부패 및 문서 위조 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정부의 네덜란드 입양에 대한 조사는 덴마크 입양인들의 경험에 신뢰성을 부여하며, 이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결론은 군사 독재 시대의 인권 침해와 불법 입양에 대한 정의를 전체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적하며, 군사 독재 시대의 통치 기간 동안 발생한 입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5 군사 독재 통치 하의 해외 입양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양인들에게 이 조사는 수많은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역사적 명확성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서 군사 독재 시기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덴마크의 많은 입양인들 사이의 회복과 화해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 대한 연구는 또한 오늘날의 희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과거의 범죄들이 현재에 반복되지 않도록 군사 독재 시대의 입양에 관한 역사적 측면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조사는 향후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아동 인권을 철저히 지키면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 해외입양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거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DKRG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덴마크 이외의 지역에서 수만 명의 한국 출신의 해외 입양된 사람들이 한국의 해외 입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한 DKRG의 요청을 따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해외 입양은 입양 기관 단체 스스로의 발명품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의해 허용, 승인 및 허가되었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부터의 국가 간 입양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수천 명의 전 한국 국적자의 근간을 이루는 상황과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무의미한 정치적 표현의 결과로 간주될 것이며, 이는 역사적 사건과 화해에 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위원회의 명시적인 목적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2.0 DKRG의 청원

입양인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군사 독재 통치 시기의 해외 입양과 관련하여 현재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다회봉사외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입양 서류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 문서들은 군사 독재 시기의 해외 입양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있어서 핵심사항입니다.

우리는 입양 서류 원본을 한국 공식 입양 사후관리 당국에 전달하여 우리의 서류와 이력이 한국 당국에 의해 보호되고, 입양 사후 관리 목적으로 한국 입양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존되고, 또한 입양인이 자신의 배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입양인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해외 인권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인이 한국 공식 입양 사후관리 기관을 통해 혈연관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자기동일권, 자신의 배경을 알 권리, 자신의 혈연을 알 권리는 유엔 등의 해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3.0 해외 입양인들의 조사 착수 요청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4항 및 6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을 알아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각각 인권침해와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DKRG는 인권 침해 가능성에 해당하는 입양인의 구체적인 사례(제2조, 4항)와 과거 사건을 분명히 하고 해외입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역사적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사건들을 제시할 것입니다(제2조, 6항).

두 가지 사항 모두 수천 명의 한국 출신 해외 입양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정의와 화해를 창출하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3.1 울분에 찬 이들과 화해하지 못한 이들

이 청원의 도입부 1.1에서 언급했듯이 입양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입양과 입양 기반 시설을 가능하게 만든 체계적인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DKRG는 파악해온 해외입양 관련 사건들을 개관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입양 관련 사건들을 검증하고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설명은 3.1.1, 3.1.2와 3.3에 나와 있으며, 이 청원에 신청한 모든 입양인들의 신청서에서도 언급된 사건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DKRG는 두 개의 주요 입양인 그룹을 소개할 것입니다. 해외입양의 주체들의 복잡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3.1.1 그룹 1: 울분에 찬 입양인들 - 즉, 입양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알게된 입양인들. ‘울분에 찬 이들’을 정의를 하자면, 본인의 출생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출생과 관련된 상황을 명백히 이해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인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다고 느끼며 억울해 합니다.

울분에 찬 이들은 평생 알고 지내온 생년월일과 나이가 입양 기관에 의해 변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분에 찬 이들은 자신이 버려진 고아가 아니고 언제나 친생부모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울분에 찬 이들은 자신이 평생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아이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거짓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된 이들은 억울해 하고 분노합니다.

울분에 찬 이들의 출발점은 특정 지점에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잘못된 생년월일. 예를 들어, 실제보다 나이가 더 어리며 살아온 삶이 거짓이 되는 경우
- b) 잘못된 출생 도시. 예를 들어, 기록상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산에서 태어난 경우
- c) 잘못된 입양인의 신원 (입양인은 입양 서류에 기재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양인이 죽은 자녀 또는 다른 입양인의 신원을 가지고 보내진 경우
- d) 고아라는 입양인의 신원이 부정확한 경우. 예를 들어, 입양 서류에서는 당신이 고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살아 있고 입양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행정적인 고아가 된 경우
- e) 심각한 질병, 영양 실조 또는 건강 악화의 경우. 입양인의 복지가 입양기관이나 한국 정부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복지 사례. 예를 들어, 입양인이 아프거나 영양 실조가 있거나 다른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수령국에 도착한 경우, 입양인이 아직 공식적인 덴마크 시민권을 받지 못하여 입양 기관과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경우
- f) 입양 기관에 의해 배경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경우. 입양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지만 배경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
- g) 입양 기관들이 제3자로부터 제3자에 관한 정보(예: 친생가족)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대한민국 입양 관련법에 따른 입양 사후 관리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 h) 형제자매의 경우, 입양인이 형제자매와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동권리협약 제8조에 따른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
- i) 입양 기관이 입양 사례의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말을 입양자에게 알렸으나 입양 기관이 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내용을 공개하기 거부하는 경우

j) 입양인이 입양 서류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는 전적으로 한국어 이름만을 사용하거나 공식 한국 입양 서류에 명시된 대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한국어 이름을 사용하는 입양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k) 입양인의 학대. 입양 전후의 입양인이 한국 입양기관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l) 입양인이 잘못된 근거(건강 관련)로 장애인으로 분류된 경우. 일시적인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동에게서 발견되었지만 영구적인 피해나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따라 장애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m) 기타 부정확하거나 허위 정보

3.1.2 그룹 2: DKRG는 수년 동안 헛되이 자신들의 입양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진실을 찾고 요구해온 화해하지 못한 입양인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한 이들의 정의는 그들의 배경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자신들의 배경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권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낍니다.

배경 정보의 불확실성과 부정은 화해하지 못한 입양인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이름을 다시 한국어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덴마크 이름에 한국어 이름을 포함하는 입양인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한국 이름은 입양 서류에 나타나는 이름이며, 따라서 한국 이름은 그들의 정체성의 통일된 한 부분이 됩니다.

DKRG는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이 기본적 인권의 침해 하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입양인들이 불법 입양의 희생자였을 수 있으며, 문서 위조, 신원 사기, 뇌물, 강압 및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해외적 입양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DKRG의 권고

해외 입양인의 상황에 대한 위원회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우리는 군사 독재 통치하의 두 입양 기관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두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의 입양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한국에서의 과거와 현재의 입양 관행은 한국의 군사 독재 통치 이후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이와 같이, 군사 독재 통치 하에서의 과거의 관행들은 한국에서 입양인에 대한 현재의 처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3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 관심 영역

3.3.1 입양의 법적 결함

-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과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불법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 변경 및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는 입양인의 수를 조사한다.
- 즉, 입양 서류의 위조 및 왜곡; 입양인의 신분 교환 및 위조; 위조되고 부정확한 출생관련 자료;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서류상의 고아가 된 입양인들; 부모의 동의 없는 불법 입양 등을 조사한다.

3.3.2 원본 서류 및 배경 정보에 대한 권리

- 진실 화해 위원회는 입양 관련 법안의 제 3자 권리 존중을 감안하여 입양인이 자신의 원본 입양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에 입장을 분명히 한다.

3.3.3 입양 사후의 효율과 보호를 위한 중립적인 입양 사후 기관으로의 이전 요구

- 진실화해위원회는 해외 입양인과 관련된 모든 원본 서류를 입양 사후 관리 서비스를 목적으로 즉시 한국 입양 사후 관리 기관에 이전하여 문서, 정보 및 개인 정보가 한국 정부에 의해 보호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진 사적 입양 기관에 의해 보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양인들의 요청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한다.

- 모든 사례들을 한국 정부 산하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서류는 후대를 위해 보호되며 파괴 및 내용의 왜곡이나 위조로부터 보호한다.

3.3.4 입양인 본인들의 정체성과 인격에 대한 권리를 위한 입양 서류의 중요성 인식

- 진실화해위원회는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을 알 권리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가 이 권리에 부응할 의무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한다.

(부록 4 참조)

3.3.5 한국의 군사 독재 기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 진실화해위원회는 입양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

(부록 7 참조)

3.3.6 입양 기관의 고의 혹은 과실 여부 조사

- 진실화해위원회는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가 부주의하게 행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

3.3.7 군사 독재 통치 하의 입양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거의 규제되지 않은 입양 기관들의 관행을 감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

- 위원회는 군사 독재 통치 기간 이후 어떤 중대한 변화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입양 제도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군사 독재 통치 하에서 그 당시 법과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부록 3 참조)

3.3.8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입양인들의 사망자 수에 대한 조사

- 진실화해위원회는 계획된 입양일 이전에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 의해 보호 아래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사망했는지 조사하고,

- 수령국으로 이송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사망했는지 조사하며,

- 위원회는 그 아이들이 수령국의 시민권을 받기 전에 수령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망했는지 조사한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양부모와 친생 부모 각각이 자녀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통보받았는지 조사한다.

3.3.9 중증 입양인 수에 대한 조사

-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감염이나 영양실조와 같은 심각한 건강 상태인 채로 보내졌는지 조사한다.

3.3.10 입양인이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입양 기관의 의무에 대한 조사

- 진실화해위원회는 덴마크에 도착한 후 얼마나 많은 입양인들이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학대, 방치 또는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는지 조사한다.

3.3.11 입양인들이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병원 입원에 대한 조사

- DKRG는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덴마크에 도착한 직후 덴마크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정보를 받았다. 당시 그 아이들은 한국 시민이었다. 우리는 진실 화해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한국 시민인 채로 덴마크에 도착한 이후 의료 처치를 받았는지 조사해 보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3.3.12 시민권과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 위원회는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한국 입양인들이 한국 시민권을 행정적으로 취소당하여 무국적자가 되었는지를 조사한다.

3.3.13 한국 시민권 박탈 조사

-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입양인들이 여전히 한국에서 한국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입양인들이 F4 비자를 신청할 때 주로 경험하는 일이다. 우리는 입양이 확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입양인이 여전히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3.3.14 입양인과 형제자매의 이별에 대한 조사

친생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는 공통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둔 이복형제도 포함된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입양 과정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친생형제들이 이별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 다른 입양 가정에 얼마나 많은 친생형제가 떨어져 배속되었는지를 조사한다.
-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가 여전히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Appendix 11 부록)

3.3.15 이별한 형제자매들의 재회 조사

- 우리는 진실 화해 위원회가 친생형제자매들의 재회 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3.3.16 입양 포기의 취소에 대한 조사

- 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입양을 후회했는지 조사하고,
- 그 어린이의 입양이 포기된 이후 입양인과의 재결합을 요청한 친생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다.

3.3.17 입양의 자발적 성격에 대한 조사

- 위원회는 입양이 완료되기 전에 입양에 반대한 친생가정의 수를 조사한다.
- 위원회는 아동의 친생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외의 사람(예: 조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입양을 포기한 아동의 수를 조사한다.

3.3.18 아동 포기의 적법성

- 위원회는 친생가족이 아동을 입양 기관에 양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사한다. DKRG는 부모로부터 입양 기관 또는 고아원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친생부모와 입양 기관 또는 고아원 간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사실은 친생부모가 자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도, 입양 기관 또는 고아원은 친생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입양 기관 또는 고아원에 양도하여 자신의 부모 권한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3.3.19 실종 아동들이 입양을 위해 버려진 이유에 대한 조사

- 위원회는 아동의 친생가족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종 아동이 입양되었는지 조사한다.

3.3.20 입양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조사

- 위원회는 입양 부모가 입양 기관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조사한다.
- 위원회는 수령국에서 입양 기관에 대한 자발적 기부와 입양을 위한 실제 지불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 자발적 기부가 실제로는 아동에 대한 지불에 해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즉, 자발적 기부가 한국 아동들의 상품화를 의미하는 사실상 자발적 기부를 가장한 아동에 대한 대금 지불이었는지를 조사한다.
- 위원회는 수령국의 기부금 규모와 입양가능한 입양인의 범위와 유형 사이에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그러므로, 핵심은 기부금이 많을수록 기증자들이 아이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3.4 군사 독재 통치하의 입양 기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는 군사 독재 통치하에 설립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입양 기관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영역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입양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는 이사회 및 일상적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야 한다. DKRG는 예를 들어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가 군사 독재 기간 동안 한국군과 관련이 있는 이사회 구성원들 및 조직의 일상 관리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출처를 통해 알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앉았던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국의 군사 독재 통치와 관련하여, 입양 기관들이 군사 독재 통치 지도자들의 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 : 재정적 성격 또는 기타) 파악하는 것은 입양자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관심사이다.

DKRG는 위원회가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군사 독재 통치 기간 동안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의 이사회에 있었던 사람,
- 이 이사회 구성원들이 고용되었는지 아니면 군사 독재 통치 및 그 지도자들과 연결 고리가 있었는지.

- c)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의 이사회 구성원들과 고위 직원들은 아동들의 관심사, 건강 및 복지를 돌보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별한 아동 관련, 사회 복지 관련 또는 입양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 d) 군사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지시, 행정 지침 및 해외 입양 규칙을 수립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 e)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입양인의 가족 등록을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 f) 어떤 고위 직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 및 한국사회봉사회의 직원들에게 작성 방법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가?
- g)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의 이사회 직위는 유급 직위였는가? 그렇다면 군사 독재 기간 동안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이사회 직위에 대한 연봉은 얼마였는가?
- h) 어떤 사람들이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기관의 관행 및 절차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고용되었는가?
- i) 군사 독재 시대에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이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아동 복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는가?
- j) 한국 정부의 어느 부처 또는 행정 기구가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를 감독했는가?
- k) 그리고 감사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가?
- l)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이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할 책임이 있었는가?
- m)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이들을 수령국으로의 긴 여정을 위한 비행기에 태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승인하고 어린이가 해를 입지 않도록 확인했는가?
- n)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들의 건강이 양호하고 영양 실조, 아프거나 발진, 염증 및 종기의 형태로 질병의 징후를 보이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었는가?
- o)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입양인들의 입양 서류에 입양인들의 배경 정보를 썼는가(예를 들어,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아라고 쓴 경우. 예를 들어, 비록 아이들이 실제로는 할머니에 의해 넘겨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리에서 발견되어 경찰에 넘겨 졌다고 쓴 경우.
- p)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입양인들의 서류를 해당 문구로 작성하도록 명령했는가?

4.0 신청 배경과 인권 침해

지난 30년, 덴마크 입양인들은 입양기관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격을 모색해왔습니다. 덴마크 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은 홀트 아동 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있습니다.

입양인으로서 우리는 한국 배경에서 우리의 입양 전 배경정보 관련 문서에 접근하기가 종종 불가능하거나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인격의 기초가 되는 조건에 대한 통찰력과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며, 덴마크의 한국 입양인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우리 조직은 해외 입양인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신청서를 통해 대표합니다.

한국 입양 기관이 입양인에게 입양에 대한 통찰력, 배경 정보 및 입양 전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격에 대한 권리를 차단하고 각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를 박탈당한 한국 입양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린 입양아로 덴마크에서 양육하는 동안 그리고 오늘날 성인 입양인으로까지 이러한 기원의 결핍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일부 덴마크 출신의 입양인들은 한국에서 친생가족을 찾았으며, 입양인 중 많은 사람들이 입양 서류에 나타나는 정보와 친생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보가 불일치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불일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배경 정보 (예: 본인은 고아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신원이 입양 기관에 알려져 있음)
- 허위 혹은 가상 생년월일 (예: 입양인으로서 입양 서류에서 표기된 것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판명되어 짐, 즉 입양 기관에 의해 거짓으로 어리게 표기되어 짐)
- 허위 혹은 가상 신원 (예: 입양인이 죽은 입양인의 신분으로 보내진 경우, 이유인 즉, 보내져야 할 아이가 수취국으로 보내지기 전에 사망, 다른 아이가 대신 보내어 짐)
- 아이들은 입양서류에 따르면 건강한 상태의 아동이어야 하는 아동은 한국 입양기관에서 병들고 영양실조로 수취국으로 보내졌고 몇몇 아동은 덴마크 나 수취국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수취국으로 보내진 입양인은 오늘날까지 질병과 영양 실조의 늦은 처리로 피해를 받는 생존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성인으로서 평생 살아온 입양인의 정체성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파괴적이거나 훨씬 파괴적입니다.

성인으로서 당신이 평생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정체성과 인격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평생을 믿고 살은 인생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덴마크 여권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작은 변화이지만 정체성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동안 당신이 고아가 된 아이라고 믿었지만 성인이 되어 친생 부모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정체성과 인격을 거꾸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입양인들이 잘못된 생일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덴마크 한국 입양인으로부터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배경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입양인의 배경정보, 출생 정보 및 입양을 둘러싼 상황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쉬우며 그것은 입양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덴마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성격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입양인으로서 우리는 매일 한국에서 온 입양인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우리의 아시아적 특성을 지닌 백인 유럽인인 덴마크 인구의 대다수로부터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 및 발언: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덴마크 말을 할 줄 아세요?”, 덴마크 말을 아주 잘하네요.”, “덴마크에서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당신은 북한이나 남한 어디에서 왔습니까?” 등은 한국에서 온 입양인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매일 우리에게 한국 출신과 한국에서 입양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국에서 온 많은 입양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있으며, 그들은 분명히 한국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나 기관에서 왜 그들이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시아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경 이야기는 한국에서 입양인으로서의 배경 이야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묻는 많은 질문에 대해 우리가 자녀들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배경 정보는 우리의 자손(한국에서 온 입양인의 후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창조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DKRG에서 우리는 입양인으로서의 우리의 배경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은 청소년과 성인 생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입양인 사례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5.0 입양인의 정체성과 인격에 대한 인권의 화해와 회복을 기초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격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인격을 알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입양기관인 홀트와 한국 사회봉사회가 배경정보를 억류하고 한국으로부터 입양인들을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입양 기관의 주장은 입양인의 배경 정보가 기관의 사유 재산이며 친생가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입양인으로서 우리는 입양인의 배경 정보가 입양 기관의 사유 재산이라는 입양 기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 싶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입양인의 배경 정보가 입양인의 사유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 회사나 조직도 개개인의 개인 정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입양인의 출신, 배경사, 출생, 한국에서의 양육, 입양을 둘러싼 상황 등에 대한 사적 정보는 한국계 입양인과 개인으로서 각 입양인의 정체성과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정보입니다.

입양 기관이 우리의 사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정보가 그들이 사유 재산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우리 조직 DKRG는 덴마크에서 입양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런 증언은 입양 기관의 개인 정보 소유권이 우리의 인격, 정체성 및 배경 정보의 체계적인 위조와 왜곡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입양된 우리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입양 기관의 이러한 배경 정보가 공개되면 입양 기관이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까지 입양 기관이 당국, 양부모 및 입양인에게 입양인의 배경과 기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완전한 불명예를 초래할 것이라는 합법적인 의혹을 야기하는 입양인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입양인들이 해외 입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류상 고아가 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우리가 몇 살인지 모르며 이유는 어떤 경우 입양 기관이 우리를 입양 시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나이를 어리게 속였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부모가 입양한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아를 입양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입양 기관 제도에서만 고아가 된 아이를 입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입양된 우리 중 대다수가 거짓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래로 한국에서 해외적으로 입양되어 오늘 날 입양 기관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을 알 권리를 박탈당한 수천 명의 입양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6.0. 해외법상의 신원 및 인격권

신원에 대한 권리는 해외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해외적으로 인정된다.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아동은 출생등록을 통해 법적 신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8조:

“1. 당사국은 불법적 간섭없이 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적, 이름 및 가족 관계를 비롯해 아동이 신분을 보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아동이 자신의 신원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원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8조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 및 권리는 아동의 남은 생애 동안 적용되며 아동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배경 정보에 근거한 입양은 해외법에 따라 불법 입양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1조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금지:

“1.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해 오직 권한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아동의 법적 신분 및 필요한 경우, 상담 등에 기초한 관계자들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여야 한다.

(b) 국외입양은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도 아동의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c) 국외로 입양된 아동도 국내입양 사례에 적용되는 안전보호 기준을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d)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알선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 적절한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본 조항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입양알선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5조 아동유괴·매매 및 거래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어떠한 목적과 형태로든 아동탈취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격을 갖고 계발할 권리는 유엔 세계인권선언문 22조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필요한 권리를 실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문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국가의 자체적인 노력과 해외적인 협력을 통해, 그리고 각국이 조직된 방식과 보유한 자원의 형편에 맞춰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문 29조는 또한 자신의 인격을 개발할 권리를 보호한다 .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 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영역에 해로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유엔 세계 목표, 목표 16 -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 제공"

16.10: "국가 법률 및 해외 협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기본적 자유 보호"

16.A: "해외 협력을 포함하여 관련 국가 기관을 강화하여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테러와 범죄에 맞서라”

7.0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정보 및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 보장

입양정보 및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의 공개 청구 절차는 한국 입양 법규정(‘입양특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 자체는 제약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절차에 따르면 해외입양인들은 국립아동관리보장원(이하 **NCRC**)에 연락하여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NCRC**는 친생부모를 찾아 그들의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국부모가 해외입양인과의 접촉을 허용하는 경우, 그들은 정보 공개에 동의를 하고,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외입양인은 친생부모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7.1 한국의 입양사후관리담당기관도 해외입양인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입양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입양사후관리담당기관도 입양기관이 보유한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 원본 서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양기관들은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공식 입양사후관리담당기관조차 해외입양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오늘날까지 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공식 입양사후관리담당기관은 단지 정보의 중개자로서 입양기관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를 해외입양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해외입양인들은 담당기관과 마찬가지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 개인정보 보호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의 결정 주체는 입양 기관이 아니라 한국의 정부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입양 기관은 입양정보 및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수천 개의 개인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2 유럽의 관점에서의 개인 정보 및 개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의 개인 정보 보호 법률과 동등합니다.

우리가 입양된 덴마크는 유럽 연합(EU)의 일부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은 **GDPR**(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통해 모든 EU 회원국에서 철저히 준수됩니다. 여기에서 원칙은 개별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시민의 개인 정보를 시민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EU 국가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럽 의회는 개인 및 사적 정보를 성문화된 법 이전의 보편적 권리로써 유럽법에 성문화된 권리로 간주합니다.

유럽의 법을 예로 든 이유는 이러한 법 개념은 한국법(**PIPA** 및 **ARCO**)과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기본(인권)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사성 때문에 입양 기관이 입양인의 개인정보를 기관의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행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 정보도 타인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그 개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EU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 음성, 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 정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EU의 법령은 시민의 권리가 기본적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EU**는 모든 EU 회원국이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GDPR** 1조 및 2조).

제1조. “개인정보처리의 보호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하 ‘헌장’) 제8조 (1)항과 유럽연합기능조약(이하 **TFEU**)의 제16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자연인의 개인정보처리 보호,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개개인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로써 존중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법은 자유, 안보 및 정의와 경제연합 분야의 성과, 경제 및 사회적 발전, 역내 시장 경제의 강화 및 통합, 그리고 개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12월 17일부터 유럽 연합은 대한민국의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이 EU GDPR과 부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3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격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

유럽인권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모의 사생활 보호권과 자녀가 친생부모를 알 권리 간에 적절한 균형점에 대하여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신분과 인격에 대한 권리가 법 이전에 존재한다는 전제에 근거합니다.

Jäggi v. Switzerland(application no. 58757/00) 사건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은 사생활 권리의 핵심 부분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재판은 자기의 뿌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개인은 자기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데 유럽 인권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심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일종의 의학적 분석, 특히 **DNA** 검사를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재판은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상대적 무게를 비교하고자 한다, 즉, 청구인의 부모를 알고자하는 권리 대 제3자의 고인의 신체에 대한 불가침성에 대한 권리, 고인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또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

첫째, 본 재판은 개인의 부모를 알고자 하는 관심은 나이가 들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평생 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이 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왔다고 본다. 그러한 행위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도덕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둘째, 본 재판이 주목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인 **DNA**검사를 반대하는데 대해서 **A.H.**의 가족은 어떠한 종교적 철학적 사유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A.H.**의 무덤의 임대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고인의 평안과 그의 시신의 불가침이 이미 **1997**년에 훼손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의 시신은 현 임대가 만료되는 시점인 **2016**년에 발굴될 예정이다. 따라서 고인의 평안에 대한 권리는 일시적으로 보호될 뿐이다.

게다가, 본 재판은 **DNA** 샘플이 채취될 고인의 사생활은 이러한 요청이 사후에 이루어졌음으로 손상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본 재판은 법적 안정성의 보호가 청구인이 친자 관계를 발견할 권리를 박탈할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재판은 스위스가 **Jäggi** 씨에게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제8조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글로써, **DKRG**는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에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본 신청서는 수만 명의 한인 해외입양인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는 우리의 청원과 관련하여, **DKRG** 이사회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보가 발생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촉할 수 있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DKRG@danishkorean.dk**.

덴마크 해외입양인 진상규명 그룹 올림

Peter Møller와 Peter Knudsen